



2026. 4. 17.(금) 09:30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경과

- 발의년월일: 2026. 4. 7.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8인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시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출장 제한 규정 강화
(안 제4조제1항)
-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안 제5조제2항)
- 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 의뢰 명문화
(안 제13조제5항)
- 라. 출장자의 의무 및 보호 조치 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1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4. 7. ~ 2026. 4. 13.(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08.)]에 따라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및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에 사회단체 대표 등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자의 의무와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조사와 감사 의뢰를 의무화를 통해 우리시의회에 국외출장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입법형식과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